

공정위,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추진

— 하도급거래에 있어 어음사용비중의 축소 유도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반적인 어음제도의 개선과는 별도로 하도급거래에 있어 어음사용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현행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급사업자인 하도급업체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행 하도급법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발주자로부터 현금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물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이나 어음 등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어음제도는 주요 선진국의 물품대금 결제방법과 비교해 볼 때 어음의 발행요건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으며, 어음발행에 대한 금융기관의 통제가 미흡하고, 제한없는 어음의 배서·유통이 인정되고 있으며, 부도시 그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 대규모기업집단 회사의 부도와 종금사 등의 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어음 부도율이 1997년 12월 현재 1.49%로 예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와 같이 어음부도율이 높고 어음할인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결제를 받고도 수급사업자인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장기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현행 어음제도는 어음수취기업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체의 존립기반을 저해하고 연쇄부도 등을 통하여 신용

사회의 기초를 침해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이 일정한 경우 의무화되어 있는 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경우를 감안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직접지급을 의무화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하도급거래에 있어 현금결제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일정비율로 현금결제를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인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받은 비율대로 현금결제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방안이 도입될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현금결제를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장기어음을 지급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현금결제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 상반기 중에 정부투자기관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하도급대금 결제수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정부투자기관 및 회사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나 직권조사대상 면제, 포상 등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상의 우대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어음 사용비중의 축소를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평적 관계에서의 발전을 도모해나갈 계획으로 있다.